

② (경과조치) 제2조제1호 증원 정원중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47명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인 토지 656.4㎡를 주택 건설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방배연립재건축 조합에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'96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.

□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
○처분 1건 토지 1필지 656.4㎡(198.6평)

시 유 재 산 관 리 계 획
('96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표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당 초			변 경			합 계			비고	
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	
계	토지	4	339,526.9	21,000,000				4	339,526.9	21,000,000	
	건물	18	70,261.9	90,446,620				18	70,261.9	90,446,620	
	기타										
취득	토지	4	339,526.9	21,000,000				4	339,526.9	21,000,000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분	토지										
	건물	18	70,261.9	90,446,602				18	70,261.9	90,446,620	
	기타										
처	토지				1	656.4	944,640	1	656.4	944,640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분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처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분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
(※賣却對象 財産目錄 收錄省略)

○議長 文一權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, 오늘로서 第83回 臨時會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. 이번 會期 中에는 3日間의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質問을 통하여서 市政 전반을 폭넓게 재조명하면서 市民이 바라는

것이 무엇이고, 市政이 行政需要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討論하는 등 성과 있는 會期였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, 짧은 常任委員會 活動期間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市民의 의